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부당이득 징수금과 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해당 법인의 무한 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게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지우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등).

II. 검토의견

- ‘제2차 납세의무’란 본래의 주된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 채권에 부족이 있는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가 주된 납세의무자에 갈음하여 보충적으로 부담하는 납세의무를 말함¹⁾.

조세의 경우 실질과세원칙, 조세징수 확보 측면 등을 감안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준조세적 성격을 지닌 사회보험의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등)의 경우에도 제2

1) 로앤비, [판례연구]세법에 나타난 주주의 유한책임의 예외-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박훈, 상사판례연구 6, 최기원 편집대표, 박영사, 2006.03.15., p.12.

차 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국세기본법」 제39조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과점주주의 책임한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의2에서도 보험료의 제2차 납부의무에 대한 과점주주의 책임한도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에서도 보험료의 제2차 납부의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의 해당 조문을 준용하고 있음.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조합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조합원”이라 한다). 다만, 조합원 간에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경우로서 그 손익분배비율이 출자액의 비율과 다른 경우에는 조합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손익분배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과점조합원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의2(제2차 납부의무) 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안 제43조의2는 보험료 외에 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하여도 새롭게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면서 과점주주의 책임한도 설정에 있어서는 기존의 입법례에 따른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제2호)와 함께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인수가액 또는 출자액’(제1호)을 규정하고 이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음.

○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법인인 장기요양기관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게 부당이득 징수금 등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나, 책임한도를 수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먼저, 안 제43조의2제1호에서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인수가액 또는 출자액’을 책임한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제2차 납부의무’의 성격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함.

① 주주유한책임원칙은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이미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추가로 출자할 의무는 없다는 것인데, 개정안은 주주에게 추가납부의무를 부여하여 주주유한책임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고, ② 이미 주주유한책임원칙의 예외

를 인정한 이상, 어느 범위까지 납부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주주의 기존 출자금액과 무관하게 예외를 인정하고자 한 입법취지, 주주가 취득한 금전적 이익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제2차 납부의무 발생 시점에서 과거의 인수가액이나 출자액은 실제 지배력이나 이익귀속과는 관련성이 적음.

- 다음으로, 과점주주의 인수가액(출자액)에 따라 납부할 부당이득금이 달라질 수 있어 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음.

① 과점주주가 출자한 가액이 지나치게 소액인 경우 부당이득금이 현저히 크더라도 소액만 반환하면 되므로, 책임범위와 부당이득 규모 간에 비례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② 같은 정도를 부당이득한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의 경우와도 형평에 맞지 않을 수 있으며, ③ 나아가 과점주주들이 출자액 자체를 줄이는 방법으로 탈법할 여지도 있음.

- 마지막으로, 조세나 준조세로서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부당이득금에 관하여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지우는 주된 입법취지는 과점주주가 법인의 부당이득금으로 이익을 취하였을 것이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에 있으므로 과점주주가 ‘일정 기간’ 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금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으며, 일정 기간은 부당이득기간으로 삼을 수도 있고, 적절히 정책적으로 기간을 정할 수도 있을 것임.

-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체계와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

(전문위원 박 혜 진)